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5도9883 가.강제집행면탈  
나.폭행  
다.모욕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오해진 외 1인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5노14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여기서의 강제집행에는 광의의 강제집행인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포함되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이하 '○○교회'라고 한다)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유지재단(이하 '△△노회'라고 한다)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 2차 매매계약은 모두 허위여서 그에 기초한 공소외인과 피고인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교회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노회를 대위하여 공소외인과 피고인 1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2 명의로 허위의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가, ○○교회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자 그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본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피고인 1의 모욕, 폭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_\_\_\_\_

                  대법관      박보영      \_\_\_\_\_

주    심      대법관      김    신      \_\_\_\_\_